

# '23.7. **택배기사** 산재보험제도 안내



'23. 7.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안전망강화TF**

# 차례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1.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현행 특고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고·플랫폼 종사자 보호 한계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보상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

◆ **(추진 경과)**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적용 및 보상제도 개선 관련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2.6.10.) → '23.7.1. 시행

●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고시 발령('23.6.27.~30.)

##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 비교>

구분	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	반드시 충족	폐지
입·이직 신고	신고 필요	(원칙) 폐지
적용제외신청	사유발생 시 신청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제외)	폐지 ※ 휴업신고제도 도입(기존보수 적용 직종 중 부과고지사업에 한정)
보수	기준보수	(원칙) 실보수
보험료율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요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적용	미적용 → 종사자의 재해와 사업장 요율 무관
하나의 사업 내 장소적 분리 사업장 관리	분리적용	(원칙) 하나의 관리번호로 적용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산재보험 적용 대상

#### ◆ 적용대상자(노무제공자)

-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①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②**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현행 산재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으로 정의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산재보험 적용 대상

-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택배기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5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를 포함
    - 현행 산재법 시행령의 택배사업 정의(개정 시행령 나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제외했던 일부 업체((주)한샘서비스)의 종사자 추가 적용(고용보험과 불일치)
- \* 국토교통부 공고(2023. 1. 5.기준) 생물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21개

(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 택배기사 산재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비교

업체명	산재보험		고용보험
	시행령 가목 해당	시행령 나목 해당	
①건영화물(주), ②경동물류(주), ③(주)고려택배 ④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⑤(주)동진특송, ⑥로젠(주), ⑦로지스밸리택배 주식회사, ⑧롯데글로벌로지스(주), ⑨성화기업택배(주), ⑩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⑪에스엘엑스택배주식회사 ⑫용마로지스 주식회사, ⑬주식회사 일양로지스, ⑭주식회사 천일택배, ⑮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⑯주식회사 컬리넥스트마일, ⑰한국택배업협동조합, ⑱(주)한진, ⑲합동물류(주), ⑳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	○	○	○
㉑(주)한샘서비스	○	X	X
한승서비스(신용카드 배송)	X	○	○

※ ①~ ㉑ 국토교통부 공고(2023. 1. 5. 기준) 생물법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자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 관리

#### ◆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여러 사업장에 노무제공 시 각각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 ◆ 사업장 관리 체계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 등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적용 가능(다음 달 초일부터 분리 적용)
  - ※ 기존 하나의 회사에서 노무제공자의 소속이 본·지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분리적용 → **하나의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통합**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 노무제공자 정보 관리

##### ● 입직 및 이직 신고 제도 폐지

- 월 보수액 신고(후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일용근로자 관리방식과 유사)

#### ◆ 적용제외신청제도의 폐지

##### ● 부상, 질병, 육아 등의 법정 사유 발생 시 제출하였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제도로 대체**

- 다만, 휴업신고는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고용부 고시)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 후술)에 한하여만 적용
- 택배기사 등 실보수로 보험료를 산정 직종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업신고 불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직종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 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

### 산재보험 적용 대상

#### ▶ ' 23.7. 이후 택배기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제도 비교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토부 허가 업체 소속의 설치 수반 택배기사 적용	적용	적용제외
적용제외자	없음	연령(65세 이상자), 소득(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자), 외국인 등
취득·상실	입·이직 신고 폐지	취득·상실신고 필요
휴업신고	미신고	신고
월 보수액	실보수	실보수
보험료 상·하한선	無	有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및 월보수액의 산정

#####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에 ‘보험료율’ 을 곱하여 매월 산정

$$\text{산재보험료} = \text{개인별 월 보수액} \times \text{산재보험료율}$$

※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하한선 없음

##### ◆ 월 보수액의 산정 ※ 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 → 실보수’로 전환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text{월보수액}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 \text{경비 C}$$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국세청 매월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경비 및 직종별 요율

##### ◆ 경비

- ‘사업소득-비과세소득’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을 경비로 인정  
(고용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text{경비} = (\text{사업소득 A} - \text{비과세소득 B}) \times \text{경비공제율}$$

- 경비공제율(고용부 고시): **16.4%** (고용보험과 동일)

##### ◆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 ※ 사업장(업종별)의 요율 → 직종별 요율로 전환

-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 택배기사 '23년 직종별 요율 **1.7%** + 출퇴근재해 요율 0.1% 가산 = **총 1.8%**
-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 ◆ 월 보수액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상용형)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소득 증명 서류 첨부)

##### ◆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재차 제출(신고서식=정정서식)**
-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정정 신고 시 사업주의 정정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보험료 부담·납부

#### ◆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현행과 동일)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½씩 부담
-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매월 납부

### 3.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산재보험료 부담

#### ◆ 사업주·종사자분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24.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적용)

-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  
요율의 1/2를 곱한 금액** ※ '23년의 산재보험료는 현행 방식대로 부과

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3,553,000원이고 산재보험요율(출퇴근재해요율 포함) 1.8%

구분	월 보수액 × 요율	산재보험료 (원단위 절사)	사업주·종사자 보험료 부담액
현행	3,553,000원 × 1.8% = 63,954원	63,950원	63,950 ÷ 2 = 31,977원
개정안	사업주	3,553,000원 × 0.9% = 31,977원	31,970원
	종사자	3,553,000원 × 0.9% = 31,977원	31,970원
	합계		63,940원
차액		10원	

##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신청

#### ◆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및 인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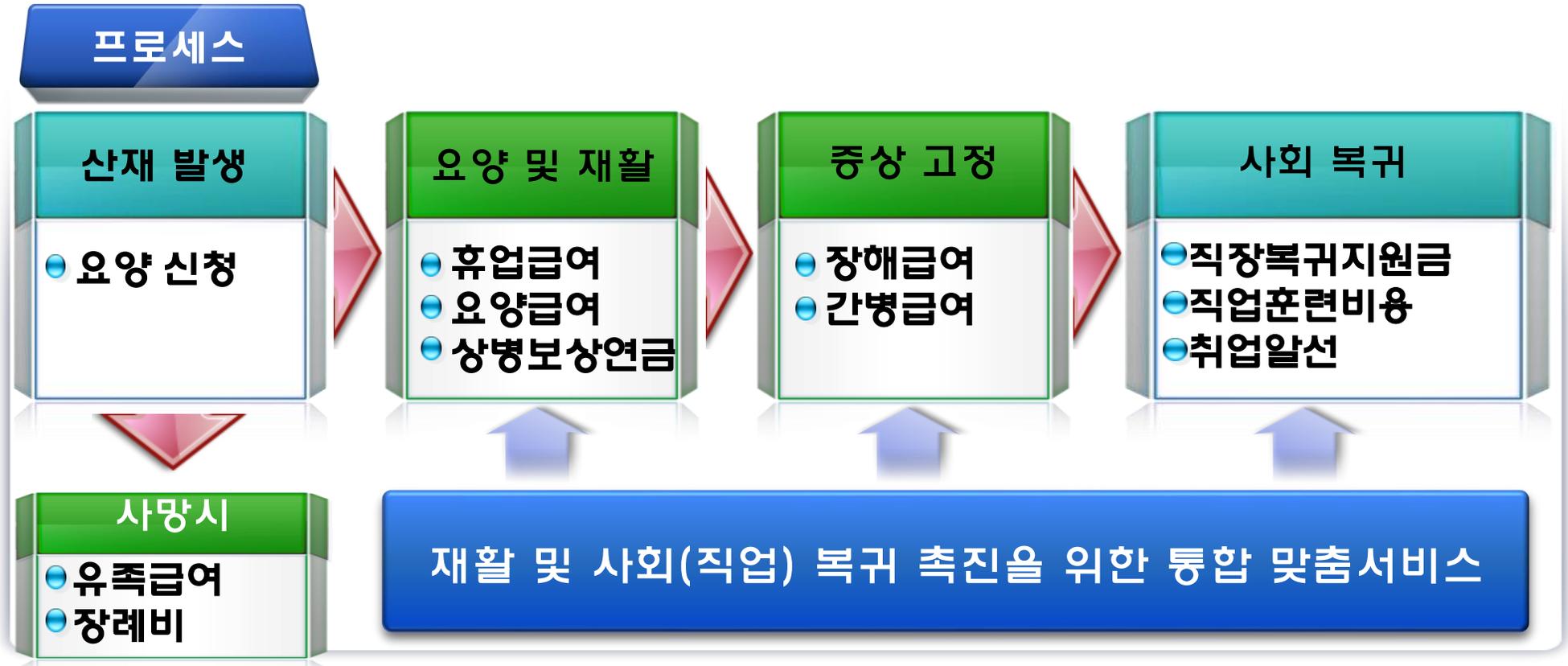
-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재해**를 보호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공단 관할 소속기관) ' 23.7.부터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  
요양급여신청소건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으로 변경
- (신청) **사업주 날인('18.1. 폐지) 없이**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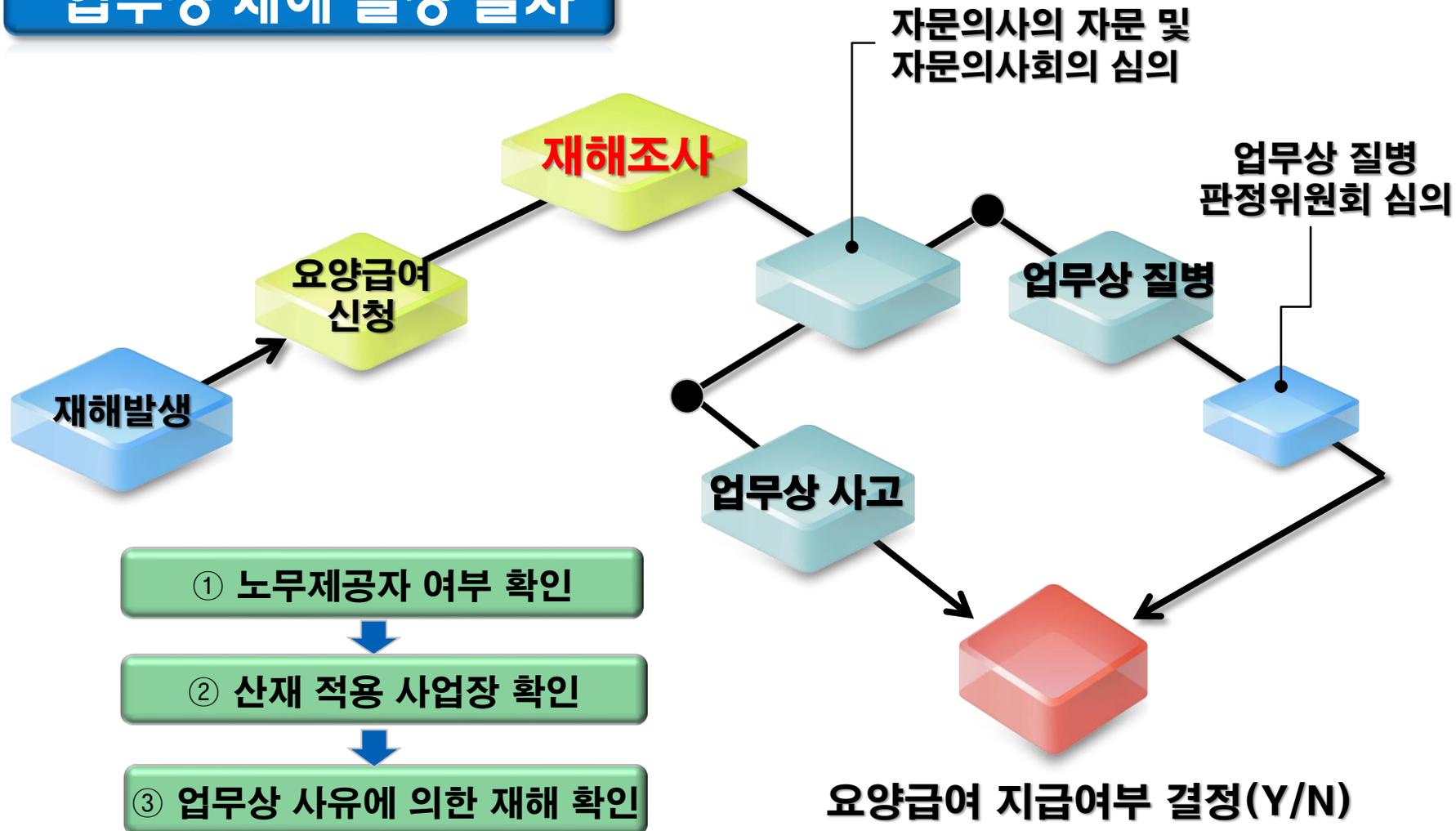
##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산재보상 프로세스



## 4.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업무상 재해 결정 절차



##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 산재보험급여

구분	급여의 종류	급여 내용
요양 중	요양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b>공단</b> 이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 지급 - 간병료, 이송료(통원 교통비) 등은 재해자에게 지급
	휴업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입·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b>평균보수의 70%</b> 를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 경과 시 폐질등급 1~3급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양 종료 이후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별(1~14급) 해당하는 장애급여 [연금(1~7급) 또는 일시금] 지급 ⇒ <b>평균보수 × 장애연금(일시금) 일수</b> ※ 장애연금 일수 138일(7급)~329일(1급), 장애일시금 일수 55일(14급)~1,474일(1급)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재해자에게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 지급
사망 시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연금( <b>평균보수의 52%~67%</b> ) 또는 일시금(평균보수의 1300일분) 지급
	장례비	○ <b>평균보수의 120일분</b>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평균보수의 산정

◆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임금(고용부 고시) → 평균보수(실보수) 개편

●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평균보수를 산정

- **(평균보수 정의)** 재해발생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 4.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 보험급여의 지급

-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부 장관이 고시  
→ '23.7 ~ '24.12. **1일당 41,150원 (30일 환산 시 1,234,500원)**

## <참고>

※ 정부는 계도기간(1년)을 두어 과태료 및 보험급여액의 징수유예

### ◆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보수액 신고 의무 위반	신고 누락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거짓 신고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 기타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또는 보험료 체납(50% 초과) 중 재해 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성립신고 전 재해) 또는 10%(체납 중 재해) 징수(납부할 보험료의 5배 상한)
- (연체금) 총 7% 한도 내 부과(납기 후 30일까지 2% 한도 하루 1/1500, 이후 5% 한도 하루 1/6000)



**감사합니다**